

공용부분(무빙위크 설치 등)변경을 위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 의거한  
**서 면 결 의 (합 의) 서**

집합건물	서울시 송파구 총민로 66 (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	--------------------------------

구 분 소유자 (본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주 소			
	전 화	휴대폰)	일반)	
	소 유 점 포 현 황	점포호수		
(유의사항) 1. 다점포 구분소유자인 경우 소유 중인 한 개의 점포호수만 기재하더라도 소유 중인 전체 점포에 대하여 서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의결권 집계를 위한 소유점포의 전유면적(m <sup>2</sup> )은 착오예방을 위하여 관리법인에서 일괄 집계하여 산출합니다.				

구 분	서면결의(합의) 의제와 합의 안		동 의 여 부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부 의 의 안	의제	상업환경 개선을 위한 공용부분(무빙위크설치 등)변경 안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합 의 안	1. 가든파이브라이프 상가가치 향상을 위해 점포(매장) 접근성을 드높여 상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무빙위크 10대(지하1층 만남의 광장에서 지상1층과 지하1층 만남의 광장에서 지하 주차장 5층까지) 등을 원안으로 설치한다. 2. 무빙위크 설치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시행자 이외의 구분 소유자는 일체부담하지 않고, 무빙위크시설을 설치 후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그 소유권은 관리단에 귀속된다.	

※ 결의요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제1항에 의거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에 대하여 5분의 4 이상의 합의를 얻어야만 결의 됨.

위 본인은 가든파이브라이프 상업 환경개선을 위한 공용부분변경(무빙위크 설치 등) 결의 승인 안에 대하여 불임의 세부자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인의 의사를 표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위 본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가든파이브라이프 관리단 및 대표위원인  
 가든파이브라이프 관리인 및 관리법인

